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421
----------	-------

발의연월일 : 2026. 1. 29.

발 의 자 : 안철수 · 김성원 · 강승규
이종배 · 박정하 · 백종현
김예지 · 서명옥 · 김장겸
김선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자영업자는 취업촉진 수당인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및 이주비 중 조기재취업 수당과 연장급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그런데 취업하거나 재창업하는 수급자격자인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자영업자가 급증하는 실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에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형평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69조의2 단서 삭제 및 제69조의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의2 단서를 삭제한다.

제69조의9제1항 전단 중 “제56조, 제57조,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를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취업촉진 수당(조기재취업 수당은 제외한다)에”를 “취업촉진 수당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장급여, 조기재취업 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2 단서 및 제69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가지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9조의2(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는 제37조에 따른다. 다만,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장급여와 제64조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은 제외한다.	제69조의2(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 ----- ----- -----. <u><단서 삭제></u>
제69조의9(준용) 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 관하여는 제37조의2, 제38조, 제38조의2,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6조, 제57조,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 제65조부터 제6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2조제1항·제43조제3항 중 “이직”은 “폐업”으로 보고, 제43조제1항 중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5호 및 제6호”는 “제69조의3”으로 보며, 제63조제1항 중 “제46조”는 “제69조의5”로 보고, 제48조제1	제69조의9(준용) ① ----- ----- ----- ----- ----- -----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 ----- ----- ----- ----- ----- -----

항 중 “제50조제1항”은 “제69조의6”으로 본다. 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u>취업촉진 수당(조기재취업 수당은 제외한다)</u>에 관하여는 제57조제1항·제3항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7조제1항 중 “수급자격자”는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본다.	----- ----- -----. ② -----<u>취</u> <u>업촉진 수당에</u>----- ----- -----. ----- -----.
--	--